

학부모님. 안녕하십니까?

교육부는 국정과제 ‘교권 강화’의 일환으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,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.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‘모두의 학교’ 구성원으로서 학생·교원·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,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학생 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송운중학교 특례]

1. 운영 시기: 현시점~학칙 제·개정 완료시점 까지 운영
2. 추진 근거: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8조제4호(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), 제12조6항(훈육 내 학생 분리) 및 제9항(소지품 분리 보관), 제18조(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)
3. 운영 내용:
 - 가. 수업 중 분리

12조 6항 [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]

| 생활지도 | 요건 | 분리장소(시간) | 절차 및 유의점 | 학습지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
|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| 대상: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조언,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| 교실 내 다른 좌석 | 교사가 지정하는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|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|
|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| | 교실 내 지정된 위치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) | 분리 후 복귀는 교사의 판단으로 결정 | |
|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| 가 |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(수업 시간 내 일부)-복도로 분리 또는 교사의 판단 하에 바로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(나향)가능 | 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2명 이상일 경우 학생 따로 따로 분리 가능 | |
| | 나 |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|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에게 요청 후 분리된 장소로 이동 시 동행자 함께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-교감선생님-->교감선생님 부재시 교장선생님 | 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, 과제 부여 등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
|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| ① 3호 '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③ 교사의 판단 하에 지도가 필요한 경우 | 교사가 판단한 지정장소 | 점심 시간(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) 이나 방과 후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 가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

나. 소지품 분리보관

12조 9항 [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]

| 요건 | 분리기간 | 분리장소 | 분리방법 |
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(예시) 화장품, 스마트폰, 에어팟, 고데기 등 | 수업시간 | 교실 지정 장소 교탁옆책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 |
|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 빔 기기 등 | 1일 |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|
|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1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가능 |
|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 | | | -분리보관함 구비 |

4. 기타: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송운중학교 특례는 학칙 제·개정 완료시점(10월 31일)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. 이후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학칙 제·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학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.

2023년 9월 15일

송 운 중 학 교 장 [직인생략]